

## II. 학사 안내

### 1. 학사 일반

- 학기 운영 : 야간 또는 주말수업
  
-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
  - 수업년한 : 2년 6개월(5학기)
  - 재학년한 : 4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
- 이수학점(전공)
  - 학기당 : 7학점 이내(교원자격증 취득예정 학생은 교직과목 포함 9학점)
    - ※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직과목(학수번호가 ZCE, PPE인 교직과목)
  
- 학점 인정
  - 입학 이전 국내·외 의 타 대학원(본교 각 대학원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과내용이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정하여 전공주임의 요청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대학원장이 인정
  - 학점 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
  - 위 각 항의 각 과목당 학점 인정은 3학점으로 한다.
  
- 선수과목 이수
  - 구 분 : 전공, 교직
  - 이수대상 : 대학의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다른 학생
  - 이수절차 : 해당 전공에서 지정한 과목을 원장이 승인
  - 이수방법
    - 전공 : 2개 학기 이내에 지정받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
    - 교직 :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28학점 이내(학수번호가 ZCA인 모든 과목)  
(2008년 이전 입학자는 학기당 3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15학점 이내)
      - ※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학기마다 취득학점 외에 별도로 3학점 이내에서 이수 할 수 있음(교직선수과목은 6학점)

## 2. 학적 일반

### • 휴학

- 휴학종류 : 일반휴학, 질병휴학, 병역휴학, 출산·임신·육아휴학
- 휴학기간 :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 초과 불가

종류	휴학기간	비고
일반휴학	1회 2학기, 합산 4학기	
질병휴학		진단서 첨부
병역휴학	병역복무 기간	입영통지서 첨부
출산·임신·육아휴학	2개 학기	관련 증명서 첨부

※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을 지난 휴학과 신입생의 제1학기 휴학은 불허. 다만, 병역복무, 질병, 출산·임신·육아의 경우는 허가 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2분의 1을 지난 경우의 휴학은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

- 휴학절차 : 학생이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와 상담 후 전공사무실로 연락하고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

### • 복학

-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복학
- 매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전공사무실로 연락 후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

### • 퇴학

- 퇴학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의 상담을 받은 후 자퇴원을 전공사무실로 제출 후 차세대정보시스템에 퇴학 신청

### • 제적

-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않은 사람
-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
- 본 대학(원) 또는 타 대학(원)에 이종의 학적을 가진 사람
-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
- 석사학위과정에서 평균평점이 2개 학기 계속하여 “C0” 미만으로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※ 등록금(수업료) 반환 기준(학칙 제47조제2항 관련)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해당 학기 개학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	등록금 전액
학기 개학일부터 30일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학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학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	반환하지 않음

### 3. 수강신청 및 정정

● 수강신청

-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강신청(수강신청확인원은 전공사무실로 제출)
- 소정 기일까지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
- 수강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등록금(학칙 제45조 관련)

구분	수강학점	납입금액
대학원	1학점 ~ 3학점	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
	4학점 이상	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

-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: 학사안내 - 수강신청 접속  
학사안내 - 수업시간표 참조

● 수강신청 취소 또는 정정

-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취소 또는 정정 불가
- 강의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업시간 중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 가능
- 수강신청 정정원을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 사무실로 제출

● 폐강

-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  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가능

#### 4. 수료 및 학위취득

• 수료학점 및 학위취득 구성표

구분	이수 학기	수료학점			학위취득 자격시험		평균 평점	논문 심사	사정결과	
		전공 필수	전공 선택	계	외국어	종합				
2008 이전 입학자	논문	5	6	20	26	○	○	B <sup>0</sup> (3.0 이상)	합격	학위취득 (졸업)
	무논문	6	6	26	32	○	○	〃		〃
2009~2011 입학자	논문	5	6	21	27	○	○	〃	합격	〃
	무논문	6	6	27	33	○	○	〃		〃
2012~2013 입학자	논문	5	6	21	27	○	○	〃	합격	〃
	무논문	6	6	27	33	○	○	〃		〃
2014~2015 입학자	논문	5	26(연구 포함)		26	○	○	〃	합격	〃
	무논문	6	32(연구 포함)		32	○	○	〃		〃
2016 이후 입학자	논문	5	26		26	○	○	〃	합격	〃
	무논문	6	32		32	○	○	〃		〃

- 학위취득 : 수료학점을 취득[평균평점 B0(3.0) 이상]하고, 학위취득자격 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과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
  - 수료 : 수료학점을 취득[평균평점 B0(3.0) 이상]하고, 학위취득자격시험 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 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
    - ※ 교직이수자는 수료 시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함
  - 미수료 : 수료학점이 부족한 학생
- ※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기 수료자는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여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무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(무논문 가능 여부 전공별로 다름)

● 학위취득 자격시험 종류

종별	과목	실시시기	응시자격	비고
외국어시험	영어, 일본어, 불어, 독어, 한문, 중국어 중 택 1	학기마다 시행 (3월, 9월)	6학점 이상 취득한 자	외국인학생에 한하여 한국어
종합시험	전공분야 3과목 이상 (전공별로 상이)	〃	3개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	

※ 합격점수 :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
※ 외국어시험의 경우 유효한 공인인증기관의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면제 가능

●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표

과 목	외국어능력시험명	시행기관	면제기준	비 고
영 어	TOEFL	ETS	IBT: 75점 이상	영어교육 외 전공자
			IBT: 87점 이상	영어교육 전공자
	TOEIC	ETS(YBM시사)	700점 이상	영어교육 외 전공자
			750점 이상	영어교육 전공자
	TEPS	서울대학교	600점 이상	영어교육 외 전공자
			630점 이상	영어교육 전공자
일 어	JPT	TOEIC위원회 (YBM시사)	650점 이상	일어교육 외 전공자
			760점 이상	일어교육 전공자
	일본어능력시험	일본국제교육협회	N2 이상	일어교육 외 전공자
			N1 140점 이상	일어교육 전공자
불 어	DELFB	프랑스교육부	A2 이상	
독 어	TestDaF	주한독일 문화원	영역별 4급 이상	
	Goethe-Zertifikat C2: GDS		영역별 60점 이상	
한국어	한국어능력시험	한국교육과정평가원	4급 이상	(외국인학생에 한정)
중국어	HSK	국가한어수평 고시위원회	신6급(180점 이상)	

## 5. 학위청구논문

- 논문지도교수 선정 : 학기 시작 후 90일 이내
-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: 3학기 이수 후
- 학위청구논문 제출
  - 제출자격 :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논문을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수료예정인 사람으로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사람
  - 공고시기 : 논문 발표 및 심사에 따른 일정을 4월초와 10월초에 공고
  - 제출시기 : 6월초와 11월초
- ※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연구윤리강좌를 이수한 후 논문 제출 가능
- 논문심사 : 석사과정은 1회 이상 실시
- 구술시험 : 논문심사위원회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실시
- 합격점수 :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
- 논문심사 통과 :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
- 논문제출 기한 : 과정수료 후 석사과정은 3년 다만, 위 기간이 지난 후에 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당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6. 교원자격증 취득

-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자격
  - 입학 시 교원자격취득을 희망한 사람
  - 교원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과 관련된 학부(과)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및 학부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
- 교직과목 면제
  - 각급 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표시과목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교직과목을 면제한다. 다만,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원 자격증 소지자와 보건교사, 사서교사,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육실습
  - 각급 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.

- 교육실습의 시기는 3학기 이수 이후로 하며,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실습을 면제한다.
- 교육실습은 학교 현장실습과 교육봉사로 구분한다.
- 교육실습의 평가성적이 D학점 이하인 자는 교육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.
- 학교 현장실습은 4주(2학점)로 한다.
-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(60시간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● **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(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 관련)**

구분	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	2009학년도 ~ 2012학년도 입학자	2013. 3. 1 이후 입학자부터	
전공 과목	<b>42학점 이상</b> -기본이수과목 14학점 (5과목) 이상 포함	<b>50학점 이상</b> -기본이수과목 14학점 (5과목)이상 -교과교육영역 6학점 (2과목)이상 포함 ※ “ <b>영양</b> ” 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	<b>50학점 이상</b> -기본이수과목 14학점 (5과목)이상 -교과교육영역 6학점 (2과목)이상 포함 ※ “ <b>영양</b> ” 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	
교 직 과 목	교직이론	14학점(7과목) 이상	14학점(7과목)이상	12학점(6과목)이상
	교과교육	4학점(2과목) 이상	-	-
	교직소양	-	4학점(2과목)이상	6학점(3과목)이상
	교육실습	2학점 이상	4학점 이상 (교육봉사 2학점 포함 가능)	4학점 (교육봉사 2학점 포함 가능)
	계	20학점 이상	22학점 이상	22학점 이상
성적기준	없음	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	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	

※ “**교직적성 · 인성검사**” 의무 실시

- 2013. 3. 1. 이후 입학자 : 재학 중 적격 판정 2회 이상
- 2013년 이전 입학자(복학자 포함) : 재학 중 적격 판정 1회 이상

※ “**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**” 의무 실시

- 2017.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이상

※ 전공과목의 **교과교육영역**(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논리 및 논술에 관한과목)에서 **6학점(2과목)이상** 필히 이수

※ 기계 · 금속교육전공, 전기 · 전자 · 통신교육전공의 교직이수자는 **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, 학기 중)**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●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과 이수학점

구 분	교직과목명	학점	개설학기	비 고
교직이론 (6과목 12학점이상)	교육학개론	2	전 학기	학부 교직선수 : 매학기 전 과목 개설  교육대학원 교직선택 : 학기마다 개설 교직과목 다름
	교육철학및교육사	2	전 학기	
	교육과정및교육평가	2	전 학기	
	교육방법및교육공학	2	전 학기	
	교육심리	2	전 학기	
	교육사회	2	전 학기	
	교육행정및교육경영	2	전 학기	
	생활지도및상담	2	전 학기	
교직소양 (6학점이상)	특수교육학개론	2	전 학기	
	교직실무	2	전 학기	
	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	2	전 학기	
교육실습 (4학점이상)	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	2	1 학기	
	교육실습(봉사활동)	2		수강신청 없음(60시간이상)
계		22		



## 7.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

[시행 2018.3.1] [경상대학교학교규정 제1440호, 2017.12.21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경상대학교 학칙」 및 「경상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」에 따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 (전공)**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한다)의 전공은 경상대학교 학칙의 [별표2]와 같다.

### 제2장 입학

**제3조 (학생모집)** ① 대학원의 학생모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학생모집 요강에 의한다.

② 교육대학원장(이하 "대학원장"이라 한다)은 입학전형실시 1개월전에 입학전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조 (입학전형)**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범위에서 매 학기 실시할 수 있으며 선발에 따른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**제5조 (재입학)** ①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②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남은 정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, 재입학자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6조 (전임교원의 입학제한)** 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전임교원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3.12.19)

**제7조 (전형위원)** 입학시험의 전형위원은 출제, 채점 및 면접위원을 겸하며,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 (합격자 결정)** ①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·불합격을 사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결정한다.

② 합격자로 확정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아니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한다.

**제9조 (지도교수)** ① 각 전공주임은 입학생에게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

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12.19)

② 지도교수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임명하며, 임명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신설2004.06.01)

### 제3장 이수과목및학점

**제10조 (교육과정)** ① 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한다.(개정 2013.12.19)

② 교과목별 이수 단위는 3학점(3시간)으로 한다. 다만, 연구 및 교직과목은 예외로 한다.(개정 2004.6.1, 2009.3.9. 2013.12.19)

**제10조의2 (수강신청)** ① 학생은 매학기 개강 이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소정 기일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확인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

**제10조의3 (수강신청 정정)**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정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강의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업시간 중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.

②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 정정원을 작성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4 (성적열람 및 이의신청)** ①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여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전산입력하고, 성적 평가표를 출력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성적은 매학기 소정의 열람기간 내에는 열람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담당교수는 정당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하고 이미 입력된 성적을 변경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5 (수료학점)** 학칙 제88조제3항에 의한 수료학점은 전공 26학점 이상으로 한다. (신설 2013.12.19., 개정 2016.1.13.)

**제11조 (선수과목)** ① 선수과목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.(개정 2006.02.23.)

② 각 전공교수회의에서는 전공선수과목 이수여부를 결정하고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2개학기 이내에 지정받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

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,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16.10.4.)

④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학칙 제85조에 따라 학기마다 취득학점 7학점(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는 9학점) 외에 별도로 3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.

**제12조 (교과목 재이수)** ① 이미 취득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.

② 재이수하여 종전의 성적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원래의 교과목 성적을 학적부에서 삭제하고,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재산정한다.(개정2004.06.01)

**제13조 (학점 인정)** ① 입학 이전 국내·외 의 타 대학원(본교 각 대학원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과내용이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정하여 전공주임의 요청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③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외 대학원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수한 학점은 학기마다 6학점 이내, 총 12학점까지 전공주임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, 교류학생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선수과목으로 학기당 2학점, 연간 4학점까지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④ 위 각 항의 각 과목당 학점인정은 3학점으로 한다.(개정 2009.3.9)

**제14조 (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학점이수)** ① 학칙 제85조에의한 교원자격증(중등교원 2급 정교사)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한다.(개정 2000.5.12, 2009.3.9, 2013.12.19)  
[표]

②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이어야 하며,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.

③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 영역의 과목은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교과목의 면제)** 각급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표시과목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교직과목을 면제한다. 다만,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원자격증 소지자와 보건교사, 사서교사,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교육실습)** ① 각급 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.

② 대학원의 교육실습은 「경상대학교학사관리규정」 제125조에 따라 사범대학장이 관장한다.

③ 교육실습의 시기는 3학기 이수 이후로 하며, 정교사 자격증소지자는 교육실습을 면제한다.

④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.(개정 2009.3.9)

⑤ 교육실습의 평가성적이 D학점 이하인 자는 교육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⑥ 학교현장실습은 4주(2학점)로 하며, 위탁한 학교로부터 교육실습 결과보고서와 성적평가표를 제출 받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⑦ 교육봉사활동은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 관찰 등으로 2학점(60시간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강좌개설)** ① 각 전공에서는 매 학기 개강 1개월 이내에 다음 학기 개설하려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강좌개설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②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1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고, 전공별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는 4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강좌개설 승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7.12.20)

③ 교원자격증 취득자를 위한 교육대학원 교직과목을 매 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개설과목은 교육학과장이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7조의2 (폐강)** ① 교과목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17.12.20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강좌개설 승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17.12.20)

**제18조 (교과과정의 변경)**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공주임이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**제4장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**

**제19조 (외국어시험 등)** ①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가를 평가한다.

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를 평가한다(개정2004.06.01)

**제20조 (응시자격)** ①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.

**제21조 (시험실시시기 등)** ① 대학원장은 학기마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계획을 수립하고, 각 전공주임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를 교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시험과목)**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, 독어, 불어, 일본어, 한문, 중국어로 하며, 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.(개정 2016.1.13.)

②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,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3과목 이상으로 정한다.(신설 2004.06.01.)

**제23조 (합격점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한 과목만을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**제24조 (전형위원)**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하며, 출제 및 채점위원을 겸한다.

#### **제5장 장학금(신설2005.02.05)**

**제25조 (장학금)** ① 장학생은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외장학금 및 외부 장학단체의 학생지정 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

#### **제6장 교학위원회**

**제26조 (교학위원회)** 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교학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『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학위원회규정』에 따른다.(개정 2013.12.19)

#### **제7장 무논문 학위**

**제27조 (수여요건)** 무논문 석사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

여야 한다.

1. 학칙 제88조제4항제3호에 의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(개정 2013.12.19)
2.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사람

**제28조 (신청)** 수료한 사람이 무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료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3.12.19)

### **제8장 수료후 등록**

**제29조 (수료후 등록)** ① 수료한 사람이 무논문 석사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료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12.19)

② 수료후 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수료 후 등록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칙 제45조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12.19)

③ (삭제 2013.12.19)

④ (삭제 2013.12.19)

**부칙** <제01440호, 2017.12.21>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# 2019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일정

연월	일(요일)	학사업무 내용	비고
2019년 3월	2(토)	1학기 개강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	<1 학기> ○ 327⇒ 수업일수 1/4선 (복학신청 마감일) ○ 423⇒ 수업일수 1/2선 (휴학신청 마감일) ○ 514⇒ 수업일수 2/3선 ○ 522⇒ 수업일수 3/4선
	2(토) ~ 4(월)	수강정정(신입생 및 재학생)	
	12(화) ~ 18(월)	1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(차세대)	
	25(월) ~ 4. 6(토)	1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전공별 실시	
4월	8(월) ~ 22(월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	
	10(수)	1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제출	
	29(월) ~ 5. 13(월)	2018학년도 후기 전공별 학위청구논문 발표	
5월	6(월) ~ 31(금)	교육실습(교직이수자)	
	16(목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발표 결과보고서 제출	
	27(월)	2018학년도 후기 심사용 논문 제출	
	28(화) ~ 6. 17(월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	
6월	15(토)	1학기 종강	
	3(월) ~ 19(수)	201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(예정)	
7월	20(목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결과보고서 제출	
	19(금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최종 제출 마감	
8월	7(수) ~ 12(월)	2학기 수강신청	
	22(목) ~ 27(화)	2학기 재학생 등록(수료후등록생, 수료연구생 포함)	
	23(금)	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	
9월	2(월)	2학기 개강	<2 학기> ○ 10.01⇒수업일수 1/4선 (복학신청 마감일) ○ 10.30⇒수업일수 1/2선 (휴학신청 마감일) ○ 11.16⇒수업일수 2/3선 ○ 11.26⇒수업일수 3/4선
	2(월) ~ 7(토)	수강정정(신입생 및 재학생)	
	7(토)	신입생 오리엔테이션(후기)	
	3(화) ~ 11(수)	2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(차세대)	
	17(화) ~ 10. 5(토)	2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전공별 실시	
10월	10(목)	2학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결과보고	
	20(일)	개교기념일	
	14(월) ~ 28(월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	
11월	4(월) ~ 18(월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발표	
	4(월) ~ 20(수)	2020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(예정)	
	21(목)	2020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발표 결과보고서 제출	
12월	2(월)	2019학년도 전기 심사용 논문 제출	
	3(화) ~ 20(금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	
	14(토)	2학기 종강	
	26(목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결과보고서 제출	
2020년 1월	17(금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신청논문 제출 마감	
2월	11(화) ~ 17(월)	1학기 수강신청(신입생 및 재학생)	
	20(목) ~ 25(화)	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(수료후등록생, 연구생 포함)	
	25(화)	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	

※ 학사운영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교육대학원 전공별 연락처

2019. 3. 1. 기준

전공	조교	전화	비고(학부)
교육철학	손현국	055-772-2130	교육학과
교육행정			
교육심리 및 교육상담			
평생교육			
교육방법 및 교육공학			
윤리교육	정은솔	055-772-2140	
역사교육	설현영	055-772-2170	
일반사회교육	강승한	055-772-2160	
지리교육	이선주	055-772-2180	
국어교육	양지영	055-772-2150	
영어교육	민미옥	055-772-2190	
독어교육	김한나	055-772-1040	독문학과
불어교육	김현정	055-772-1060	불문학과
일어교육	정여령	055-772-2200	
한문교육	이응복	055-772-1160	한문학과
철학교육	추정인	055-772-1150	철학과
수학교육	김예지	055-772-2250	
물리교육	정진실	055-772-2210	
화학교육	유정화	055-772-2220	
생물교육	김선숙	055-772-2230	
지구과학교육	김효민	055-772-1470	지질과학과
가정교육	김혜선	055-772-2240	유아교육과
음악교육	정성환	055-772-2280	
미술교육	김동권	055-772-2270	
체육교육	김태일	055-772-2290	
농업교육	천숙현	055-772-1870	농학과
기계·금속교육	황아람	055-772-1620	기계공학
전기·전자·통신교육	김민주	055-772-1720	전자공학
컴퓨터교육	박유리	055-772-1380	컴퓨터과학과
영양교육	정민주	055-772-1430	식품영양학과
영재교육	김예지	055-772-2250	수학교육과
한국어교육	양지영	055-772-2150	국어교육과
중국어교육	성지영	055-772-1180	중어중문학과
유아교육	김혜선	055-772-2240	
34개 전공			



# 기타 사항

## 1. 예비군 편성

- 직장 및 지역 예비군에 소속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예비군연대에 편입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연대 편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비군연대(☎772-0361)에 제출

## 2. 차량 정기주차권 발급

- 신청서식 : 행정실 및 주차관리실(본관 1층 주차관리실) 비치
- 구비서류 : 차량 정기권 신청서 1부(월 주차비 10,000원)(☎772-0370)

## 3. 기타

- 학사 업무 관련 : 전공사무실 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(☎772-2105)
- 학교(행정실) 주소 : (660-701) 진주시 진주대로 501 (301동 216호)